

문서번호 : 12-02-노동-01  
수 신 : 언론사 및 사회단체  
발 신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담당: 전명훈 간사 / T. 02-522-7284)  
제 목 : [보도자료] '송경동/박래군/정진우' 공동변호인단, 야간시위·일반교통방해·해산명령 불응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 제출  
전송일자 : 2012. 2. 6.(월)  
전송매수 : 총 5매

## [보도자료]

### '송경동/박래군/정진우' 공동변호인단, 야간시위·일반교통방해·해산명령불응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 제출

1. 귀 언론사에 감사드립니다.
2. 검찰은 지난 2011.12. 송경동 시인을 비롯한 박래군, 정진우에 대하여 희망버스를 기획하였다는 등의 혐의로 집시법상 야간시위 금지위반, 해산명령 불응, 일반교통방해, 그리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공동주거침입)등으로 기소한 바 있습니다.
3. 이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산지부, 진보신당에서는 '송경동/박래군/정진우' 공동변호인단(이하 공동변호인단)을 구성하여 지난 1. 17.(화) 및 1. 20.(금)에 열린 1차 공판기일에서 변호인모두진술 등 변론을 시작하였습니다.
4. 공동변호인단에서 검토결과, 송경동 시인을 비롯한 박래군, 정진우에 대하여 적용된 야간시위 금지위반, 해산명령 불응, 일반교통방해죄 등은 위헌적인 소지가 크다고 판단하여 각 해당 법률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기로 하였고, 해당 재판부(부산지법 제6형사부)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5. 송경동 시인을 비롯한 박래군, 정진우에 대한 2차 공판기일은 내일, 2. 7.(화) 오후 2시, 부산지법 제301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며, 공동변호인단에서는 해당

기일에 출석하여 각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대한 변호인 의견을 비롯하여 검찰 측 증거에 대한 변호인 의견진술 등을 할 예정입니다.

6. 이에 보도협조요청을 드리오니, 자세한 내용은 별첨한 각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요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 야간시위 금지, 해산명령 불응, 일반교통방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요지>

2012년 2월 6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권영국



## <야간시위 금지, 해산명령 불응, 일반교통방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요지>

### ■ 야간시위금지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 이미 야간집회 금지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이 난 바 있음. 그러나 야간집회 금지가 그나마 집시법 제10조에서 옥회집회를 허용할 수 있는 단서규정을 두고 있는 반면, 야간시위금지는 위 단서규정도 적용되지 않고 일률적, 일반적,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음.

○ 또한 경찰 등이 우려하는 집회, 시위 과정에서 폭력 등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이를 제한, 처벌하는 현행 법률들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가려서 처벌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집시법에 의율 할 필요도 없음. 특히 사회 성원의 다양화, 다원화에 따라 야간 시위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비해 아직도 농경시대에 적용되었던 통행금지법과 같은 야간시위금지를 통해 일률적, 전면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외국 입법례에 비추어 보더라도 헌법상 보장된 시위의 자유, 표현의 자유에 대한 최소 침해의 원칙 등에 위반된다 할 것임.

○ 물론 현재 야간시위 금지 규정(집시법 제10조, 제23조)에 대해서는 위헌법률심판제청을 거쳐 현재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2010헌가2)에 있으나, 빠른 결정을 촉구하고 보완하는 의미에서 본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기에 이르렀음.

### ■ 해산명령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 해산명령죄를 규정하고 있는 집시법 제24조 제5호, 제20조 제2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제청신청을 함.

○ 해산명령불응죄는 첫째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위배됨. 해산명령불응이란, 집시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집회 또는 시위에 참가한 자에게 집시법 위반행위를 하지 말라고

명령했는데 그 명령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를 계속 유지하는 행위로서, 별도의 위법 행위를 창출하거나 법익침해가 발생하지 않음. 살인죄 등의 중대한 범죄에 대하여 경찰이 범죄를 진압하기 위하여 중단명령을 한 경우, 이를 위반하였다고 하여 가중 처벌하는 규정은 없음. 살인죄 그 안에 중단 이후의 행위에 대한 평가도 내포되어 있음. 따라서, 해산명령불응에 대하여 별도로 처벌 규정을 두는 것은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배됨.

○ 둘째,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됨. 우선, 집시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처벌 규정을 두고 있고 그 위반자에 대하여 현행범 체포를 할 수 있으므로, 해산명령불응에 대하여 처벌하는 것은 기본권 제한 목적을 실현시키기에 적합하지 않음. 특히 박래군의 경우, 미신고집회 단순 참가에 대하여 처벌 규정이 없고 야간시위 참가에 대하여 법정형이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인데, 해산명령불응죄의 법정형은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써, 위법행위보다 이를 진압하는 경찰의 해산명령 불응에 대하여 더 중하게 처벌하는 것은 비례원칙에도 위반됨.

## ■ 일반교통방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185조(일반교통방해)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함

○ 형법 제185조는 명확하게 행위태양을 규정하지 않고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는 자 모두를 처벌하도록 하여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며, 여러 가지 교통방해 행위에 대해 포괄적으로 중형에 처하기에 도로교통법 등 다른 법률이 가볍게 처벌하는 동일한 행위에 대해서 중하게 처벌할 수 있기에 비례성의 원칙에 반하고, 집회나 시위 참가자들에게도 적용되어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평가를 받아왔음.

○ 그러나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기타 방법”으로 앞에 “손괴”와 “불통”이라는 두 가지 행위태양이 기재되어 있어 “기타 방법”의 해석범위를 제한하고 있기에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음.

○ 그런데 이 사건에서 검찰은 “불통하게 하는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했다는 혐의로 기소하고 있는데, 공소사실을 살펴보면 통상적으로 “불통”의 의미로 해석되는 “도로상 장애물 설치”가 아니라 “불통하는 결과를 야기하는 모든 행위”의 의미로 “불통”을 해석적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그렇다면 헌법재판소의 판단과는 달리 “기타의 방법”을 제한하는 것은 손괴 하나 밖에 없으며, “불통”은 “기타 방법”과 마찬가지로 도로의 소통을 방해하는 모든 행위를 의미하기에 전혀 제한기능을 수행하지 못함.

○ 따라서 “불통”이 “도로의 소통을 방해하는 모든 행위”로 해석됨에 따라 형법 제 185조는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며, 이로 인해 비례성의 원칙 역시 위배되게 되고, 집회나 시위의 자유에 대해 침해하게 됨.